혁신경영 실행지침

제정 2023. 9. 26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임직원의 혁신경영 인식제고를 도모하고, 혁신활동의 적극적 지원, 혁신경영 추진 및 관리체계의 정립, 혁신계획 수립 및 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혁신경영"이란 기존에 행해지던 묵은 관행, 관습,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2. "혁신계획"이란 기획재정부에서 2022. 7. 29. 자로 발표된 '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 인'에 따라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기능, 조직·인력, 예산, 자산, 복리후생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계획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혁신경영에 관하여 다른 지침 및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
제2장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

- 제4조(혁신계획의 수립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혁신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전년도 혁신계획의 추진 현황 점검 및 환류에 따른 개선 계획
 - 2. 기능, 조직·인력, 예산, 자산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
 - 3. 그 밖에 임직원 혁신경영 인식제고 및 내재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5조(혁신계획의 시행 지원 및 관리) ① 진흥원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혁신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7조에 따른 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혁신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·점 검을 해야하며, 이 경우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혁신계획 시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혁신경영 관련 교육) 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경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소속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담당부서) 진흥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혁신경영 업무를 총괄하며,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하다.

제3장 혁신경영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

- 제8조(혁신경영위원회의 설치) 진흥원은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 의결하기 위하여 혁신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혁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혁신과제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임직원 선정에 관한 사항
 - 3. 진흥원의 혁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
 - 4. 그 밖에 혁신경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진흥원 원장으로 한다.
 - ③ 외부위원은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, 내부위원은 각 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한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(혁신경영 담당부서의 장)를 둔다.
- 제10조(위원회의 임기)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② 내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상정할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- 3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4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3조(비밀준수 의무) 위원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진흥원 업무 관련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혁신경영 우수사례 선정 및 확산 노력

- 제14조(혁신경영 우수사례 선정 등) 진흥원은 제7조에 따른 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혁신경영 공모전 중 우수한 성과로 인정된 혁신경영 공모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다.
- 제15조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진흥원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혁신과제를 제시한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 포상금 지급, 우수 직원 승급 심사시 가점 부여, 우수 부서 조직평가 가점 부여 등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혁신 우수사례의 확산 노력) ① 진흥원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혁신경영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.
 - ② 진흥원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혁신경영 우수사례의 확산계획을 수립·시행할 시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<2023. 9. 26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혁신과제 제출양식

과제 No. 과제명		0-0 사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일반국민이 여			_	신규과제 ☑ 이해하기 쉬운 제목				
추진분야		(전략기획팀 분류)		추진부서	부서명					
①과제성격		,								
		V								
②수행기간		단기(~DD년) 과제 중기(DD+1~DD+3년) 3)+3년) 과제	장기(DD+4년 이후) 과제					
		\square								
③연계정책		○ 국정과제 및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종합계획·전략								
④추진배경		○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술·사회·경제·거시적 환경 변화 분석 ○ 정부 정책 방향성 부합 및 이해관계자 제언·요구 사항 반영 여부								
⑤목표성과		○ (계량) 계량적 목표 성과 제시 ○ (비계량) 비계량적 목표 성과 제시								
⑥KPI (계/비계량)		구분 지표명	'DD	'DD+1	'DD+2 'D	D+3 'I	DD+4			
		계량								
		비계량 성과 (게라) <i>트레기</i>	- 10 27-	20 57 -	21 -2 -2 2 2					
		증거 ○ (계량) 통계자료 인용, 설문조사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측정 ○ (비계량) 이해관계자 간담회·인터뷰, 외부 보도자료 인용 등								
	추진 내용	○ KISA(부서)의 주요 역할 중심으로 작성(주도적 사업 수행 내용) - 단순 사업비 지원, 업무 지원 내용은 지양								
	장애	○ <i>장애 요인과 함께 극복 방안 제시</i>								
⑦ 주요 내용	- 경역 - 극복	- 극복 성과를 함께 명시하는 방향성 지향								
	추진 일정	주요활동(세부사업명	등) 'DI) 'DD+1	'DD+2	DD+3 ′I	DD+4			
	자원 배분	구분 'DD 인력(명) 예산(백만원)	′DD+1	′DD+2	'DD+3	'DI)+4			
⑧ 협업노력		○ 단순 협업(MoU체결 등)은 지양하며, 협업 기관(기업)별 역할이 드러날 수 있 도록 구체적 명시								
⑨성과확산 -		○ 홍보 채널(SNS, 온라인 매체, 보도자료 등) 활용한 홍보계획								

건의제목	건의제목 개선내용을 알수 있는 제목						
규제 소관부처	0000부 0000국 00000과						
건의자 (소속·직위·성명)	한국인터넷진흥원 전략기획팀 홍길동	연락처	010-0000-0000 abc@kisa.or.kr				

□ 건의내용

8point

- (규제내용) 신산업 관련 경제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제내용 기술(2~3줄 요약)
 - ex) 000을 000하도록 규제/제한/한정 등

Spoint

- 규제내용에 대한 상세한 추가설명 작성
 - * (관련법규) 000법 제0조제0항제0호
- (문제점) 규제에 따른 실질적 현장애로(문제점) 작성
 - 상기 규제로 인해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간·절차·비용 등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추가설명 작성

*

< 해외 또는 국내 사례(필요시 작성, 요점만) >

- o (**국가명 또는 기업)** 내용작성
- (개선건의) 개선할 내용 명확히 작성(2줄 요약)
 ex) 000을 000할 수 있도록 XXX를 허용/완화/확대/폐지 등
 - 개선건의(상단내용) 추가설명, 건의(안) 제시

관련법규	- ㅇㅇㅇㅇㅇ법 제00조제0항제0호			
- 판단답ㅠ 	- ㅇㅇㅇㅇㅇ법 시행령(규칙) 제00조제0항제0호			
건의성격	■ 신규 건의 □ 반복 건의			
반복건의 이력	■ 건의경로(또는 건의처) : ■ 제출일시 : ■ 건의 결과 :			